

조선전기 열녀의 존재 양상과 열행 인식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열녀를 중심으로-

이 재 두*

- I. 머리말
- II. 시기별 지역별 열녀 분포
- III. 조선전기 열녀의 존재 양상
- IV. 조선전기의 열행 인식
- V. 맺음말

국문초록

『신증동국여지승람』(이하 『승람』)은 1485년(성종 16)에 초간한 『동국여지승람』을 46년 후인 1531년(중종 26)에 신증한 전국읍지이다. 이 책에 실린 각 고을의 열녀 항목을 분석해보면 조선전기 지배층이 인식하고 있던 유교 윤리를 실천한 모범적인 여성의 기준을 알 수 있다. 『승람』에는 모두 157명의 여성이 고을별 열녀 항목에 실려 있는데, 81%는 조선시대 인물이며, 경상도와 전라도가 50%를 넘는다. 『승람』 편찬 당시 이 두 지역은 인구도 많았지만, 유교화가 많이 진척되었으며, 열녀 사례 발굴에도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승람』의 열녀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

* 영남고등학교 교사 / 2sigory@daum.net

었으나 개가하지 않고 오랫동안 수절한 경우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자살은 조선 건국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초간 때인 본조 시기보다는 신증 시기에 더 증가하였다. 피살은 모두 고려 말 왜구의 침입에 맞서 절개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경우이다. 약혼자가 사망하였지만 시집가지 않은 사례는 단 1명뿐이며, 약혼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따라 죽은 열녀는 없다. 여묘를 살기도 하였는데, 여말 선초 유교윤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다. 『삼강행실 효자도』(1432)의 국내 효녀 8명 중 4명이 『승람』에서는 열녀 항목에 실린 것은 특기할 만하다.

『승람』에 실린 열녀는 조선전기 지배층이 이상적으로 삼았던 모범적인 여성의 이미지이다. 조선후기의 열녀상과는 다르며, 조선전기 일반적인 여성들의 존재 양상과도 다른 아주 특별한 여성들의 모습이다. 조선전기의 열녀는 단순히 개가를 거부하고 종신 수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묘를 살거나 하층민이 포상 받는 경우도 많았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당시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절개를 지키다가 피살된 경우는 적었다. 『승람』을 편찬하면서 이전에는 효녀로 인식하던 인물을 열녀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조선전기 유교화가 진척되면서 여성에게는 열행을 효행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승람』의 열녀 항목은 조선전기 유교화 과정의 산물이며, 임진왜란 당시나 그 이후에 포상한 조선후기의 열녀와는 분명히 다르다.

◆ 주제어

『신증동국여지승람』, 열녀, 수절, 개가, 유교화.

I. 머리말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열녀는 조선 사회를 대표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조선시대 열녀에 대하여 종래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도 보인다.

조선시대에 강조한 열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 연구자는 강명관이다. 그는 잔혹하고 비합리적인 효·열·충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을 들면서, 『삼강행실도』는 효자와 열녀의 표본이자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한 ‘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이라 주장하였다.¹⁾ 이어 열녀는 조선시대에 발명된 것으로, 외견상 윤리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남성-양반 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책략이었으며, 이 책략이 성공했기 때문에 조선이 가부장제 사회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²⁾ 또한 그는 조선 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사나운 처’(한부)의 존재를 여성권력이 우위에 있었던 현상으로 보면서, ‘한부’의 존재가 양란 이후 문헌에서 점차 사라지는 경향을 단계적 부계친족제의 성립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³⁾ 이화형 또한 조선의 여인들은 열녀로 표창받기보다는 재가하기를 소망했고 주위에서도 종용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⁴⁾ 중국에서도 수절한 과부를 칭찬하는 것이 부계와 가부장 제도를 강화시켜 주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⁵⁾ 후이민[胡益民]은 명·청 시대 휘주(徽州) 지역 열녀들의 처참했던 생존상황을 조정의 선동적인 분위기 조장, 순절을 최고의 미덕처럼 생각하도록 찬양했던 성리학적인 세뇌, 그리고 가부장 제도의 영향

1) 강명관, 『『삼강행실도』-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2002, 25~29쪽.

2) 강명관, 『節婦, 烈婦, 烈女』, 『東洋漢文學研究』 25, 2007, 27~28쪽.

3) 강명관, 「조선전기 부처제(婦處制)와 ‘사나운 처’(悍婦)」, 『여성과 역사』 25, 2016, 23쪽.

4) 이화형, 「섹슈얼리티로 본 한국 전통여성의 주체적 삶의 양상」, 『동아시아고대학』 38, 2015, 182쪽.

5) P. B. 에브레이, 배숙희 역, 『중국 여성의 결혼과 생활』, 삼지원, 2000, 325쪽.

및 이 삼자의 공포조장과 상호협력이 빚어낸 결과로 파악하였다.⁶⁾

한편, 여성 자신의 입장,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차원에서 열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연구도 있다. 이경하는 『삼강행실도』의 열녀서사가 어떤 특별한 위기상황에서 보여준 열녀들의 자기폭력이 세계의 폭력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상층신분의 도덕적 자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15세기에는 여성의 개가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사회였음도 강조하였다.⁷⁾ 이순구는 조선에서 열녀는 이데올로기적 강제와 여성들의 내면화가 묘하게 맞물려 이루어진 결과물로, 여성들 스스로의 선택인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⁸⁾ 권순형은 매우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았던 양수생 처 열부 이씨의 삶을 통해 과연 열녀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⁹⁾ 서보경 또한 여성들은 강렬한 자기 의지와 목적의식으로, 즉 여성들의 선택, 여성 스스로의 결정으로 열녀가 된 것이며, ‘열녀’는 이데올로기적 강제와 여성들의 내면화가 맞물려 이루어진 결과물로 평가하였다.¹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하 『승람』)은 1485년(성종 16)에 초간(初刊)한 『동국여지승람』을 46년 후인 1531년(중종 26)에 신증(新增)한 전국읍지이다. 이 책의 인물 항목에는 효자와 열녀를 많이 실고 있다. 『승람』의 서문에서는 ‘인물을 논하는 데는 효자·열녀를 으뜸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승람』에 실린 열녀 기록은 인물에 따라서는 상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간단하다.¹¹⁾ 『승람』 열녀 항목은 『삼강

-
- 6) 후이민, 「명청시기 휘주 여인들의 순절과 정절」, 『호남문화연구』 50, 2011, 2쪽.
7) 이경하, 「『삼강행실도』의 폭력성 재고-열녀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5, 2009, 477~478쪽.
8) 이순구, 「열녀; 죽임인가, 죽임인가?」, 『한국여성사 깊이읽기』, 푸른역사, 2013, 190쪽.
9) 권순형, 「고려말 열녀 사례 연구-양수생 처 열부 이씨」, 『여성사 연구』 22, 2015, 29~62쪽.
10) 서보경, 「동아시아 열녀담론 재고」, 『우리文學研究』 51, 2016, 36쪽.
11) 이 글에서는 『승람』의 고을명과 邑格 및 시기만을 표시하고, 『승람』의 冊名과 卷數 및 남편 이름 등은 생략한다. 열녀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사가 긴 인물은 경주부 신라 설씨, 안동대도호부 고려 김씨, 영산현 고려 신사친의 딸, 성주목 고려 배씨, 진주목 고려 최씨, 태인현 본조 임씨, 광산현 고려 문씨 모두 7명이다.

행실 열녀도』와 함께 조선전기의 열행 인식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후기 편찬한 각 고을 읍지에는 『승람』의 열녀 기록을 대부분 그대로 싣고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 열녀의 존재 양상과 열행 인식을 살피는 데는 『승람』만한 자료가 없다.¹²⁾ 『승람』의 열녀 기록은 조선전기 이 책을 초간하고 신증하였던 당시 지배층이 인식하고 있던 유교 윤리를 실천한 모범적인 여성으로서 열녀의 이미지나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동안 『승람』의 열녀 항목을 분석하여, 열행의 실상이나, 열녀 이미지, 혹은 조선전기 지배층의 열녀 인식 등을 밝히려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¹³⁾

『승람』의 열녀 항목은 자료를 모으고 수록 인물을 확정하며, 실제 편찬하는 과정에서 주요 인물을 빠뜨리거나,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¹⁴⁾ 『승람』에 고려 시기 열녀로 실린 인물은 대체로 고려 말의 인물들로, 『실록』을 보면 조선 건국 이후 포상한 사례가 많다. 『승람』 열녀 항목에 실린 표제 인물은 모두 160건이다.¹⁵⁾ 표제 인물 가운데 7

12) 모든 서술은 하나같이 『승람』의 규례에 따라 하되, 만약 이후의 사실 중에 채록해 넣을 것이 있으면 역시 채록해 넣는다.[總敍一依勝覽規例 而如有伊後事實採入者 則亦爲採入次] 『獻山誌』 瀛館凡例(이재두, 『『헌산지』에 실린 『여지도서』의 목차와 편찬 규정』, 『영남학』 60, 2017, 252쪽 재인용).

13) 물론 『실록』에도 많은 열녀 포상 기록이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선전기의 열녀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실록』은 다수의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쉽지 않은 자료로 『승람』보다는 ‘대중적’이지 않았다. 박주는 15세기 삼강윤리의 보급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삼강행실도』의 간행과 『승람』의 효자와 열녀 항목 설정을 다루었다. 그는 효자와 열녀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하여 비교적 인구가 많고 양반 세력이 강력한 삼남지방이 많은 정표자수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승람』의 열행 사례를 간단히 유형화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朴珠, 『朝鮮時代の旌表政策』, 一潮閣, 1990, 12~15쪽; 강명관은 자신의 책 부록에 『승람』의 열녀들을 정리하여 실었다. 강명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열녀 자료』,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670~695쪽.

14) 『고려사』 열전 열녀편에 실린 사례 12건 중 1257년(고종 44)의 胡壽妻 俞氏, 1270년(원종 11)의 玄文突妻, 공민왕대의 洪義妻와 安天儉妻는 해당 고을이 확인되지 않아서인지 『승람』에 나오지 않는다. 호수의 처 유씨는 호수가 맹주 수령 때의 일임이 확인되나 『승람』 맹산현에는 열녀 항목이 없다. 『고려사』 권121, 열전34 열녀참고.

명은 2개 고을에 걸쳐 실려 있다.¹⁶⁾ 강화도호부의 3녀, 면천군의 꺾씨 형제, 나주목 나종의 두 딸은 1명으로 처리하기에는 곤란하다. 결국 두 개 고을에 실린 7명은 1명씩으로 줄이고, 1건씩으로 기록한 인물들도 개인별로 파악하여 4명을 보태면, 『승람』에 실린 열녀의 실제 인원은 모두 157명이다.¹⁷⁾

원래 이 글은 『승람』 효자 항목과 함께 열녀 항목을 정리하여 조선전기의 효열 인식을 살펴보자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¹⁸⁾ 이번 글에서는 『승람』 열녀 항목에 실린 실제 인원 157명을 모집단으로 열녀의 시기별·지역별 분포와 열행(烈行)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승람』에 실린 열녀의 존재 양상을 통해 조선전기 지배 세력들이 인식하고 있던 열녀 이미지와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조선 시기 인물은 『승람』에서 분류한 것처럼, 초간 때까지의 조선초기 인물인 ‘본조(本朝)’와 초간 이후 추가한 인물들인 신증본조를 ‘신증(新增)’으로 구분하여, 『승람』의 초간 시기와 신증 시기의 변화도 아울러 파악한다.

15) 강명관의 책에는 『승람』 열녀의 표제 인물 156건을 요약 정리해 놓았으나, 영산현의 신씨, 삼가현의 소사, 태인현 임씨, 배천군의 변씨 등 4명을 빠뜨렸다. 강명관, 앞의 책, 670~695쪽.

16) 손씨(밀양도호부 본조, 초계군 신증, 최씨(고려 진주목, 영암군) 이씨(고려 고부군, 정읍현), 지리산녀(백제 남원도호부, 구례현), 임씨(본조 남원도호부, 구례현), 계수(구례현 본조, 벽동군 신증), 안씨(고려 정읍현, 평창군)가 해당된다. 밀줄 친 고을 인물로 통계 처리하였다. 구례현은 1499년(연산군 5) 고을 사람 배목인·문빈 등이 참언을 만들어 역모를 꾀하다가 죽임을 당하자 부곡으로 강등되어 남원에 소속되었다가 1507년(중종 2)에 복현되었다. 『승람』 구례현 건치연혁; 『중종실록』 권2, 중종 2년(1507) 3월 7일 경술에는 구례 사람 고진석의 아내 계수로 나오나, 함중 유생 오극통, 강서 군졸 김잉달과 함께 포상된 인물이다. 함중과 강서는 평안도에 해당하며, 『승람』의 본조 기사보다는 신증한 것을 근거로 평안도 인물로 파악하였다.

17) 『승람』 효자 항목에 실린 실제 효자 수는 381명이다. 이재두, 『신증동국여지승람』 효자편의 효행 사례와 정표 유형, 『조선사연구』 24, 2015a, 18쪽.

18) 『승람』 효자 항목에 대한 분석은 석사 논문으로 제출하였으며, 두 개의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이재두, 『東國輿地勝覽』의 孝行 記錄과 孝 認識,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이재두, 앞의 논문(2015a); 이재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반영된 효 인식, 『영남학』 28, 2015b.

II. 시기별 지역별 열녀 분포

『실록』과 『승람』에 실린 열녀의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조선전기 지역별 유교화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표 1>은 『승람』을 신증한 시기까지에 해당하는 『태조실록』부터 『중종실록』까지의 지역별 열녀 포상 자수이다.¹⁹⁾

<표 1> 『실록』에 실린 국왕별 열녀 포상자수 (단위 : 명)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	중종	합계	비율	
한성부				1					1		5	7	3%	
경기도	2		1	4		1			3	1	4	16	7%	
충청도	1	1	3	14		3		1	5	1	15	44	20%	
경상도			8	27		6			5	1	12	59	27%	
전라도	2		2	14		6			10	2	14	50	22%	
황해도			1	3		1			2	1	4	12	5%	
강원도	1		2	7					1		4	15	6%	
함경도	2		1			4	2				2	11	5%	
평안도			2	2		1					6	11	5%	
합계	합계(명)	8	1	20	72	0	22	2	1	27	6	66	225	100%
	재위(년)	7	2	18	32	2	2	14	1	25	11	39	153	
	연평균(명)	1.14	0.50	1.11	2.25	0	11	0.14	1	1.08	0.55	1.69	1.46	

사실 『실록』에서 단순히 국왕별로 포상한 열녀의 숫자만을 파악하여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재위 연도를 고려하여 연평균 열녀 포상자를 파악해 보면, 어떤 국왕이 어느 정도로 열행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

19) 朴珠, 앞의 책, 17쪽, 29~59쪽, 106~113쪽 참고. 세조대 1명과 연산군대 6명을 찾아 보완하였다. 박주의 글에서 미상 처리한 성종대의 홍의달 처 김씨, 나씨 형제, 중종대의 벌등이는 『승람』을 통해 각각 포천, 나주, 의주 인물임을 확인하여 반영하였다.

다 분명히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실록』에 의하면, 열녀 포상 사례는 세종 때가 72명으로 가장 많고, 중종(66명), 성종(27명), 단종(22명) 순이다.²⁰⁾ 문종 때는 한 명도 없고, 정종, 세조, 예종 때에는 한 명씩이며, 연산군 시기에도 6명이나 된다. 그러나 재위 기간을 고려하면 단종 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세종, 중종 순이다. 세종 때에는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고, 성종과 중종 때에는 각각 『승람』을 초간하거나 신증하였다. 『태조실록』부터 『중종실록』까지의 열녀 포상자 비율은 경상도 27%, 전라도 22%, 충청도 20%이다.

연산군은 재위 11년 동안 송영 처 신씨, 곡산의 이씨, 성주의 문덕, 예산의 매읍덕, 함평의 장씨와 박씨 모두 6명을 정문 복호하였다.²¹⁾ 이들 중 곡산군의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승람』에 실려 있다. 『승람』에 연산군 때 포상 받은 열녀는 경기 삭녕군 신증 효양비 1명뿐인데 『연산군일기』에는 나오지 않는다.²²⁾ 오히려 『승람』에는 연산군 때 남편이 희생되는 과정에서 열녀가 된 신증 사례가 8명이나 실려 있다.²³⁾

어쨌든 연산군은 정권 말기에 이르러 “요즈음 효자·열녀라고 하는 자 중에 손가락을 끊거나 살을 베는 것이라면 사람마다 미치지 못할 바이나, 삼년상을 이행한 자까지도 포상하고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은 다 몇몇한 도리가 있으므로 삼년상을 입어서 마땅히 그 예절을 다해야 할 것이요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

20) 이숙인은 『실록』에서 국왕별로 세종 68명(2.13%), 성종 32명(1.28%), 중종 87명(2.23%)의 절부를 찾아내어 중종 시기에 가장 많이 포상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2014, 97~115쪽.

21) 『연산군일기』 권24, 3년(1497) 6월 17일 정해; 『연산군일기』 권36, 6년(1500) 2월 17일 신축; 『연산군일기』 권43, 8년(1502) 3월 15일 정해; 『연산군일기』 권49, 9년(1503) 4월 29일 을축; 『연산군일기』 권49, 9년(1503) 5월 14일 기묘.

22) 효양비는 일찍이 남편을 따라 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남편을 물고 가자 돌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쫓아가니, 호랑이가 마침내 버리고 달아났는데, 연산군 2년(1496)에 정려문을 세웠다. 이 사례를 보면 연산군 시기에도 더 많은 열녀 포상자가 있었으나, 『연산군일기』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23) 한성부 공신옹주, 유씨, 박씨, 김씨, 광주목 이씨, 영천군 이씨, 상주목 정씨, 진주목 정씨.

런데 요사이 송영의 아내가 다만 삼년상에 예절을 다함으로써 포상하는 열(列)에 들었으니, 이것이 어찌 옳은가.” 하며 무분별한 효자나 열녀 포상을 비판하였다.²⁴⁾

<표 2>는 『승람』에 실린 열녀 157명을 시기와 지역으로 나누어 그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실록』에 실린 열녀와 『승람』에 실린 효자의 비율도 표시하였다.

<표 2> 『승람』에 실린 열녀의 분포 (단위 : 명)

지역 \ 시기	초간			신증 본조	합계		비교		
	신라/ 백제	고려	본조		합계	백분율	『실록』 열녀	『승람』 효자	
한성부	0	0	0	7	7	4%	3%	5%	
경기도	0	4	6	5	15	10%	7%	5%	
충청도	0	4	8	8	20	13%	20%	13%	
경상도	1	9	21	11	42	27%	27%	40%	
전라도	1	9	21	13	44	28%	22%	17%	
황해도	0	0	7	2	9	6%	5%	6%	
강원도	0	2	1	3	6	4%	7%	4%	
함경도	0	0	3	0	3	2%	4%	2%	
평안도	0	0	3	8	11	7%	5%	8%	
합 계	합계	2	28	70	57	157			
	백분율	1%	18%	45%	36%	100%	100%	100%	100%

『승람』의 본조 시기에는 1485년(성종 16) 이전까지의 조선초기 열녀를 반영하였다. 백제나 신라 및 고려 시기의 열녀마저도 사실은 당시 조선을 유교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 지배 세력들, 1485년 『승람』 편찬자들의 시각에 의하여 선정한 인물들이다. 신증 시기는 성종 중반 이후부터 1531년(중종 26) 이전까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24) 『연산군일기』 권57, 11년(1505) 1월 4일 경인.

『승람』의 열녀는 신라·백제(1%), 고려(18%)보다는 본조(45%), 신증(36%) 등 조선시대의 인물이 훨씬 많다. 신라는 경주부의 설씨, 백제는 구례현의 지리산녀뿐이다. 지역별로는 전라도 28%, 경상도 27%, 충청도 13%로 삼만 지방이 68%에 이른다. 한성부는 신증, 함경도는 본조에만 실려 있다.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는 본조 시기에, 평안도는 신증 시기에 많이 실려 있다. 『실록』에는 전라도가 22%인데 비하여 『승람』에는 28%나 된다. 『승람』 편찬 당시 전라도 지역 담당자들이 열녀 사례 발굴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도 지역 담당자들은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 비하여 열녀 사례 발굴에 소홀하였다. 『실록』에는 충청도가 20%이나 『승람』에는 13%밖에 되지 않는다.²⁵⁾ 1413년(태종 13) 2월 충청도와 경상도 도관찰사의 보고에 따라 효자·절부를 포상하였다.²⁶⁾ 충청도 인물로는 여흥의 변종생, 문의의 전경생, 청주의 손씨, 온수의 오씨이고, 경상도 인물은 안동의 김씨, 풍산의 김씨, 진주의 최씨, 함양의 송씨, 성주 화원현 김자강이었다. 경상도의 절부(節婦)와 효자는 『승람』에 모두 실었으나, 충청도는 『승람』에 전경생만 정문을 세웠다는 기록을 남겼다. 청주의 손씨는 나이 30세 이전에, 남편을 잃고 절개를 지키며 과부로 살았는데, 어미의 집상(執喪)에 분묘를 3년이나 지켰다. 절부이며 효녀로 포상하였으나 『승람』에는 실지 않았다.

『승람』 편찬 당시 열녀는 열행을 구체적으로 신도록 하였다. 충청도 20명의 열녀 중에서 공주목의 고려 고씨 1명을 제외한 19명은 구체적인 열행 사례를 기록하였다. 『승람』에 실린 충청도의 전체 효자 48명 중 19명은 효행 사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²⁷⁾ 『승람』에서 열행 사

25) 조선전기 『승람』을 신증한 중종 때까지 『실록』의 효행 포상자 비율을 보면 경상도 24%, 충청도 21%, 전라도 15%이다. 『승람』의 비율은 경상도가 40%, 전라도가 17%, 충청도가 13%로 그 차이가 크다. 경상도는 효자 사례를 비교적 충실히 수록한 반면, 충청도는 소홀하였다. 이재두, 앞의 논문, 2015a, 23쪽; 결국 『승람』의 효열 사례를 보면, 경상도는 상대적으로 열녀보다는 효자 발굴에 더 적극적이었다. 이재두, 앞의 논문(2015b), 332쪽.

26) 『태종실록』 권25, 13년(1413) 02월 7일 병진.

례를 신지 않은 경우는 함경도에 2명이 더 있을 뿐이다.²⁸⁾

『승람』에는 전체 331개 고을 중에 99개 고을(30%)에 열녀 항목을 두었다. 도별로 전체 고을에서 열녀 항목을 설정한 고을의 분포를 보면, 전라도 47%, 경상도 40%, 경기도 34%, 황해도 25%, 충청도 24%, 강원도 19%, 평안도 17%, 함경도 14%순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실록』을 보면 충청도에서도 유교화가 크게 진행되었으나, 충청도 지역을 담당하던 『승람』 담당자들이 효열 사례 수집에 소홀하였는지 『승람』에는 그 분포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는 유교화가 많이 진척된 지역이었다. 한성부의 열녀는 신증에만 7명이며, 고려 왕조의 도읍이었던 개성부에는 열녀가 전혀 실리지 않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Ⅲ. 조선전기 열녀의 존재 양상

사실, 『승람』의 열행 사례를 유형화하여 조선전기 열녀의 존재양상을 살피기는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승람』의 열행 사례를 수절(守節), 자결(自決), 피살(被殺), 호환(虎患), 간병(看病), 기타(其他) 모두 6개의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⁹⁾ 『승람』에 실린 열녀들을 지역별, 시기별로 살펴보면 조선전기 지배 세력들이 인식하였던 유교 윤리를 실천한 모범여성으로서의 열녀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승람』에 실린 열녀의 유형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7) 이재두, 앞의 논문(2015b), 328쪽.

28) 함경도에서는 열녀 3명 중 안주목 본조 한씨 한 명만 사례가 실려 있고, 함흥부 본조 막장과 온성도호부 본조 안덕은 『실록』에 열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려 있으나 『승람』에는 단순히 절이나 절부로 포상하였다는 내용만 실려 있다. 『태종실록』 권29, 15년(1415) 1월 16일 을묘; 『단종실록』 권13, 3년(1455) 3월 14일 기미.

29) 이숙인은 『실록』에 실린 열녀들을 개가 거절, 사절(중사형, 위기형), 단순 수절, 시부모 봉양, 남편 상제례, 애모애훼, 남편 구함, 서사 없음, 단지 모두 10개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이숙인, 앞의 책, 115쪽 및 130쪽.

<표 3> 『승람』에 실린 열녀의 지역별 유형

(단위 : 명)

지역	유형	수절	자결	피살	호환	간병	기타	합계	
								합계(명)	백분율
한성부		6	2					8	4%
경기도		4	4	4	1	1		14	10%
충청도		16	1		1	1	1	20	13%
경상도		22	10	6	4			42	27%
전라도		27	7	6	2	1	1	44	28%
황해도		6	1		1	1		9	6%
강원도		2	2		1	1		6	4%
함경도		2			1			3	2%
평안도		5	3		2	1		11	7%
합계	합계(명)	90	30	16	13	6	2	157	100%
	백분율	58%	19%	10%	8%	4%	1%	100%	

한편, <표 4>는 시기별로 분석한 것이다.

<표 4> 『승람』에 실린 열녀의 시기별 유형

(단위 : 명)

지역	유형	수절	자결	피살	호환	간병	기타	합계	
								합계	백분율
백제/신라		2						2	1.3%
고려		9		16	2		1	28	17.8%
본조		47	11		8	3	1	71	45.2%
신증		32	19		3	3		56	35.7%
합계	합계(명)	90	30	16	13	6	2	157	100%
	백분율	58%	19%	10%	8%	4%	1%	100%	

1. 수절

『승람』에 실린 열녀 157명 중에는 수절한 경우가 90명(58%)으로 가장 많다. 충청도는 열녀의 80%가 수절 사례이며, 한성부 75%, 황해도 66%, 전라도 66%, 경상도 52%이며, 경기도는 29%이다.

수절 관련 서사에는 강릉대도호부 신증 김씨처럼 남편이 죽자 곡하고 울부짖으며 지극히 슬퍼하였고, 복을 마치고도 오히려 아침저녁으로 전(奠)을 폐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일반적이다. 개가거부와 여묘살이도 수절 유형에 속한다. 함경도 함흥부 본조 막장과 온성도호부 본조 안덕은 단순히 절의나 절부로 정문 복호 받은 사실만 기록하였다.

『승람』에는 남편이 죽자 여묘(廬墓)한 열녀가 고려 2명, 본조 17명, 신증 4명이다.³⁰⁾ 나주목 본조 나씨 형제는 둘 다 일찍 과부가 되어 남편의 묘소에서 3년간 묘막(墓幕) 생활을 했다. 집이 가난했지만 제사 때는 정성을 다하여 지냈다. 목사 권천(權踐)이 조정에 보고하여 복장리에 한 쌍의 비를 세웠다. 그러므로 그 동리를 절부리라 하고, 그 자손들을 복호(復戶)하였다.

개가(改嫁)를 거부하고 수절한 열녀는 고려 1명, 본조 13명, 신증 6명이다.³¹⁾ 경상도 창녕현 고려 윤씨는 나이 23세에 과부가 되자 외삼촌 판사 성윤덕이 다시 시집보내려 했으나 그 뜻을 빼앗지 못하였으며 51세에 죽었다. 24년을 수절하는 동안 집안이 화목하니 국가에서 그의 절

30) **고려** 대흥현곽씨, 영암군 김씨, **본조** 고양군 신씨, 마전군 홍씨, 문의현 박씨, 영동현 정씨, 예산현 매읍덕, 언양현 정씨, 삼가현 정씨, 익산군 오씨, 금구현 박씨, 함열현 이씨, 나주목 나씨 형제, 광산현 민씨, 구례현 임씨, 평산도호부 조씨, 곡산군 강씨, 배천군 원씨, **신증** 한성부 유씨, 민씨, 광주목 이씨, 진주목 정씨; 『승람』에서 여성들의 효행 사례를 보면, 부모가 병들거나 위난에 처하는 등 극한 상황에서 손가락을 잘라 약으로 쓴다거나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부모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묘를 사는 경우는 없다. 이재두, 앞의 논문(2015b), 339쪽.

31) **고려** 창녕현 윤씨, **본조** 문의현 양씨, 연산현 허씨, 먼천군 치자, 영해도호부 구음방, 선산도호부 한씨, 의령현 석씨, 단성현 이씨, 전주부 이씨, 부안현 김씨, 남원도호부 김씨, 담양도호부 우씨, 곡산군 강씨, 안주목 한씨, **신증** 성주목 문덕, 초계군 손씨, 거제현 김씨, 고부군 금이, 장성현 즉지, 벽동군 계수.

개와 행실을 가상히 여겨 비석과 정문을 세워 표창했다. 전라도 고부군 금이는 젊어서 남편에게 쫓겨났는데 동생의 남편이 개가시키려 했으나 한사코 따르지 않고 시부모에게로 도망쳐 가 다시 남편과 합하였으며, 시부모를 진심으로 모시다가 남편이 죽자 친히 묘에 가서 상식을 올리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폐하지 않았다. 초계군 손씨처럼 개가를 거부하며 자결을 시도하다 실패한 경우도 있다.³²⁾

충주목 본조 최씨는 약혼자가 일본 정벌에 종군하였다가 전사하였으나 일생을 수절하였다. 경주부 신라 설씨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군대에 간 약혼자를 기한인 3년을 지나 6년을 기다려 혼인하였으며, 선산도호부 본조 약가는 왜구에게 잡혀간 남편을 8년간이나 기다려 남편이 살아 돌아오자 함께 살았다. 강원도 이천현 고려 손씨는 나이 21세 때에 남편이 중국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나, 시어미를 봉양하는 데에만 정성을 다하였다.

남편 사후 여성들은 친정 부모의 개가 요구와 이웃의 위협 아래 놓이기도 하였다. 전라도 정의현 고려 정씨는 합적(哈赤)의 난에 남편이 죽었는데, 군관이 강제로 장가들려 하자 칼로 스스로 목을 찌르려 하였으며, 늪도록 시집가지 않았다. 경상도 단성현 본조 이씨는 19세에 홀로 되어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서, 재가시키려고 하자 깊은 못에 몸을 던졌다가 겨우 살아난 뒤 시부모를 정성껏 섬겼다. 영천군(永川郡) 신증 이씨는 연산군 때 남편이 죽임을 당한 뒤 관비로 있으면서 항상 조그만 칼을 차고 자기 몸을 지켰다.

심지어 공주목 본조 김씨는 남편이 외출하고 혼자 있는데, 이웃 사람이 밤에 그 방에 들어와서 강탈하려고 칼을 빼들고 위협하며, 온몸에 자상(刺傷)을 내었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전라도 광산현 고려 문씨는 왜구에

32) 초계군 손씨는 16세에 남편이 죽었는데, 3년 동안을 울며 조석으로 몸소 전을 올렸다. 복을 마치자 그의 조부모가 젊은 나이에 과부된 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개가시키 고자 하니, 손씨는 죽기로 거절하였다. 그래도 강제로 개가시키려 하니, 손씨는 대숲에 몰래 들어가서 목을 매었다. 그 형이 보고서 풀었는데, 곧 孀家에 가서 살다가 32세에 죽었다.

게 붙잡혀가다가 적에게 더럽히면서 살기보다는 깨끗한 몸으로 죽는 것이 낫겠다며 낭떠러지에 몸을 던졌으나 담쟁이덩굴이 있어 살아났다.

열녀 중에는 국왕에게 소장을 내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열행으로 이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충청도 한산군 본조 윤씨는 남편이 재상 홍윤성의 종에게 피살되자, 세조가 온양에 거둥하였을 때, 스스로 소장을 지어 원통한 정상을 호소하여 홍윤성의 종을 저자에서 찢어 죽이게 하였다. 경상도 문경현 본조 최씨는 남편이 죽자 글을 지어 제사하기를, “봉황이 함께 날 때에는 서로 어울려 울면서 즐겼는데, 봉(鳳)이 날아가고 내려오지 않으니 황(凰)이 홀로 운다. 머리를 긁으면서 하늘에 물었으나 하늘은 말이 없다.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어 한(恨)이 끝이 없네.” 하였다. 경상도 군위현 본조 서씨는 시집간 지 겨우 1년 만에 남편이 죽자 지나치게 슬퍼하면서, 늘 집 뒤 대밭에 들어가 대나무를 부둥켜안고 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흰 대나무 세 떨기가 나왔다.

2. 자결

남편 사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열녀는 30명(19%)인데 본조와 신증에만 나온다. 경기도 4명, 경상도 10명, 전라도 7명이다.

남편이 죽자 스스로 목매어 죽은 열녀는 8명(5%)으로 본조 3명, 신증 5명이다.³³⁾ 경상도 삼가현 신증의 한 과부[召史]는 남편이 물에 빠져 죽자 언덕에서 그대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평안도 상원군 신증 조씨는 남편이 죽자 3일을 통곡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남편이 죽자 제대로 먹지 않고 울부짖어 곡하다가 기운이 다하여 죽은 열녀는 9명(6%)으로 본조 3명, 신증 6명이다.³⁴⁾ 남원도호부 본조 강

33) **본조** 경기 고양군 석금, 전라도 고창현 김씨, 무주현 양씨, **신증** 경기 양근군 기매, 경상도 삼가현 소사, 전라도 임피현 석비, 강원도 영월군 잉질지, 평안도 상원군 양씨·조씨.

34) **본조** 안동대도호부 김씨, 전라도 남원도호부 강씨, 원주목 조씨, **신증** 한성부 박씨·

씨는 남편이 죽자 남편의 시체를 안고 7일간이나 음식을 먹지 않다가 죽었다.

개가를 거부하다가 죽음을 선택한 열녀는 4명(3%)으로 본조 2명, 신증 2명이다. 경기 양근군 본조 옥금은 남편이 병으로 죽어 상사(喪事)를 마치니, 부모가 억지로 개가시키려 하자 스스로 목매었다. 경상도 단성현 본조 어느 과부[召史]는 남편이 나무하다가 범에게 해를 당한 뒤 부모가 딴 곳에 시집보내려고 하자 미리 알고 목매어 죽었다. 밀양도호부 신증 난비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자, 그 부모가 개가시키려 하니, 목 놓아 울면서 말하기를, 한 몸으로 두 남편을 섬기는 일은 죽어도 감히 하지 못하겠다며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김해도호부 신증 현금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여 현금을 버렸으나 시부모를 봉양하였는데 아비가 개가시키고자 하니, 목매어 죽었다.

남이 장가를 들러 하거나 옥보이려 하자 목매어 죽은 열녀가 8명(5%)으로 본조 3명, 신증 5명이다. 본조 함양군 김씨는 사직 여자군에 이어 박용덕이 아내로 삼고자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목매어 죽었다. 안음현 옥금은 마을 사람이 옥보이려고 핍박하여 오자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목매어 죽었다. 칠원현 연이는 정경이 옥보이려 하자, 응하지 아니하고 절개를 지켜 죽었다.

신증 김포현 덕수는 길에서 강포(強暴)한 놈을 만났으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죽었다. 고성현 옥지는 시어미와 살았는데, 남이 옥보이고자 하니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해남현 종이는 어떤 사람이 강간하였다 하여 관청에 고소하려 하니, 애매하게 피를 더럽혔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며 목을 매어 죽었다. 해남현 석을금은 젊어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종이 옥보이려 하자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목매어 죽었다. 순천도호부 동질금은 남편이 죽고 거상을 마치자 어느 사람이 장가를 들러 하니 목매어 죽었다.

단종과 연산군 때 정치적 사건으로 희생당한 남편으로 인해 따라 죽

김씨, 상주목 정씨, 황해도 배천군 변씨, 평안도 이산군 김씨.

거나 관노의 위협을 피해 죽은 열녀가 5명(4%)으로 본조 1명, 신증 4명이다. 고양군 본조 석금은 단종 때에 남편이 역당(逆黨)에 연좌되어서 사형되자 몸을 더럽힐 것을 우려하여 목매어 죽었다. 신증 한성부 박씨는 무오사화 때 남편이 귀양 가자 상심하여 제대로 먹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한성부 김씨는 갑자사화로 남편이 살해되자 제대로 먹지 않고 울부짖어 곡하다가 한 달이 넘어서 세상을 떠났다. 상주목 정씨는 갑자사화에 남편이 피살되자 60여 일이나 먹거나 마시지 않다가 죽었다. 공주목 고씨는 남편이 죄로 죽고, 고씨가 연좌되어 관비가 되었는데, 관노가 강탈하려 하자 목매어 죽었다.

3. 피살, 호환, 간병, 기타

피살된 열녀는 16명(10%)인데, 모두 고려 말의 인물로 왜구의 침입에 맞서 절개를 지키다가 희생당하였다.³⁵⁾ 강화도호부 삼녀는 왜구가 강화에 침입하여 멋대로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였는데, 왜구를 만나자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서로 끌어안고 강에 빠져 죽었다. 이들 3명도 왜구의 침입이라는 상황 속에서 절개를 지키려다가 죽었으므로 피살에 해당한다. 성주목 배씨는 왜적이 쫓아와 활을 겨누며 강에서 나오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어찌 적에게 더럽혀지겠느냐 하며 화살을 맞아 죽었다. 광산현 김씨는 우왕 때 왜구가 갑자기 쳐들어 와 붙잡아다 욕을 보이려 하자, 김씨는 “차라리 만 번 죽을지언정 욕을 당하지는 않겠다.” 하고 끝까지 굽히지 않으니 적이 죽이고 말았다.

호환은 13명(8%)으로 전국에 고루 분포한다. 호환으로부터 남편을 구한 사례가 8명,³⁶⁾ 열녀가 호랑이와 싸웠음에도 남편이 죽었거나 곧 죽

35) **고려** 경기 강화도호부 삼녀, 경기 교동현 조씨, 경상도 영산현 신씨·신씨, 성주목 배씨, 진주목 최씨, 함양군 송씨, 거창군 최씨, 진주부 임씨, 정읍현 안씨·이씨, 함열현 홍씨, 광산현 김씨, 남원도호부 이씨.

36) **고려** 안동대도호부 김씨, **본조** 성주목 눌덕, 단성현 연이, 함경도 흥원현 내은덕, 평안도 성천도호부 난공, **신증** 경기 삭녕군 효양비, 충청도 정산현 옥배, 평안도 의주

게 된 열녀가 4명,³⁷⁾ 남편의 묘 옆에서 여묘 살다가 범이 아들을 물어가는 것을 막은 경우는 예천군 본조 권씨 1명이다.

안동대도호부 고려 김씨는 남편이 수자리 차례가 되자 좋은 날을 가려 밖에 나가서 자다가 범이 물어가자, 나무 활을 잡고 소리쳐 부르짖으며 앞으로 달려들어, 왼손으로는 남편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범을 치면서 거의 60보를 쫓아가니 범이 버리고 갔다. 김씨가 업고 집에 돌아왔더니, 날이 샅 무렵에 남편이 다시 살아났다. 그날 밤에 범이 또 와서 으르렁거리므로 김씨가 “너도 영물(靈物)인데 어찌 이렇게 심하냐.” 하니 범이 집 옆에 있는 배나무를 물어뜯고 가버렸다. 나무가 곧 말라서 죽었다.

회양도호부 고려 권금의 아내는 남편이 밤에 범에게 잡히니 장정 7, 8명도 모두 감히 구하지 못하였는데, 아내가 남편의 허리를 안고 문지방에 기대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범이 버리고 갔다. 남편은 곧 죽었다.

예천군 본조 권씨는 20세 때에 남편이 죽으니, 몸소 흠을 쳐다가 집의 북쪽에 장사지내고, 5세 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침저녁으로 무덤 곁을 떠나지 않은 채 3년을 마쳤다. 하루는 범이 아들을 잡아가니 권씨는 왼손으로 아들을 붙들고, 오른손으로 범에게 항거하며, “하늘이여, 아는 것이 있거든 비오니 굽어 살피소서.” 하니 범이 곧 버리고 갔다.

간병은 6명(4%)으로 본조 3명, 신증 3명이며 고려 시기에는 없다.³⁸⁾ 강릉대도호부 이씨는 남편의 병이 위독하자, 은밀히 선조의 무덤에 가서 분향하고 기도한 다음 칼을 뽑아 손가락을 끊고 함께 죽기를 맹세하였다. 이씨에게 작은 딸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크기가 대추만한 약을 내려주는 꿈을 꾸었더니, 남편의 병이 과연 나왔다.

기타는 2명(1%)이다. 공주목 고려 고씨는 사례는 없이 정문 받은 사실만 실려 있으며, 태인현 본조 임씨는 남편이 서울에서 벼슬하고 있을

목 벌등이.

37) **고려** 강원도 회양도호부 권금 처, **본조** 전라도 금산군 삼덕, 함평현 박씨, 황해도 배천군 세은.

38) **본조** 관천현 봉금, 무안현 자비, 강령현 김덕, **신증** 부여현 이씨, 강릉대도호부 이씨, 개천군 막시.

때 집에 불이 나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늙고 병든 시어미를 구한 사실이 나라에 보고되어 정문을 세우고, 의부(義婦)라 불렀다. 열녀라기 보다는 효부라 할 수 있으며, 『삼강행실 효자도』(1432)에 실려 있다.

한편, 1370년 편찬한 『원사』 열녀전에 실린 188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³⁹⁾ 피살이건 자결이건 죽음으로 정절을 지킨 여성이 71명(38%)으로 가장 많다. 남편을 따라 죽은 순절 여성 51명(27%), 재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산 수절 여성 44명(23.4%), 수절에 포함되지만 시부모를 극진히 받든 효부 8명, 친부모에 효도한 효녀 14명(7.4%)이 있다. 기타로는 남편을 구하러다 죽은 3명, 나라를 위하여 죽은 2명, 노동을 거절하다 죽은 1명, 적에게 항거하다가 죽은 1명, 전처 아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1명이다. 『원사』는 다른 종류의 기록이고, 100년이 넘는 시차도 있지만, 『승람』에 실린 열녀의 존재 양상과는 차이가 난다.

IV. 조선전기의 열행 인식

1406년(태종 6) 정부는 세 번 결혼한 여성(삼가녀)을 자녀안(姦女案)에 오르게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않았다. 성종은 사족 부녀의 실행(失行)을 엄려하며, 언문으로 된 『삼강행실열녀도』를 출판하여 서울의 오부(五部)와 여러 도에 반사(頒賜)하여, 부녀들에게 강습(講習)하게 하였다. 1484년(성종 15) 『경국대전』에는 간통하였거나 재혼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는 문무 관리로 진출할 자격이 없다는 규정이 실렸다. 이들은 서자들과 함께 소과와 대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여성에게 재혼은 위법은 아니었지만 결혼한 여성의 직계 자손들에게 미치는 이데올로기적·법적 암시는 과부들에게 재혼을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⁴⁰⁾

39) 金澤中, 『『元史』 「列女傳」의 수록기준과 서술형태』, 『中央史論』 10·11, 1998, 35~358쪽.

40) 이상은 마르티나 도이힐러 저, 이훈상 역,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 380쪽, 382쪽.

『동국여지승람』 편찬을 추진하던 시기는,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 시기와 겹친다. 『승람』이 1481년(성종 12) 초고본을 완성하고 1485년 초간본을 간행하였다면,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추진한 사업이지만, 성종 때에 와서야 최종적으로 확정된 완성본을 편찬하였다. 1485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내용의 수정을 금하였다.⁴¹⁾

『경국대전』의 재가녀 자손 금고 규정은 당시 풍습이나 인정(人情)에 맞지 않는 급진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다. 연산군 때에는 자녀가 없는 30세 이하 과부는 재가를 허용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대전은 고칠 수 없고, 강상을 부식하여 지치(至治)를 피하고자 한 성종의 특별한 유훈을 저버릴 수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여 법전 조항을 수정하지 않았다.⁴²⁾ 선조 때부터 순종 때까지 열녀로 포상 받은 845명 가운데 개가 거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는다.⁴³⁾

1. 과부수절(寡婦守節)

『승람』에는 모두 열녀로 항목을 설정하였지만, 열녀·열부와 절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중국에서는 여성이 30세 이전에 남편을 잃은 뒤 50세까지 개가하지 않고 과부로 수절하면 절부(節婦)이며, 약혼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시집가지 않은 수절과부도 절부이다. 남편이 죽은 뒤 남편을 따라 죽거나, 겁간에 저항하다 죽거나, 능욕을 당해 수치심에 자진한 경우는 열부(烈婦)이다. 약혼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따라 죽으면 열녀(烈女)

41) 『성종실록』 권173, 성종 15년(1484) 12월 4일 정사; 『경국대전』 예전 잡령 “官吏不勤守成法 輒以己意輕改舊章者 依律論”; 강순애, 「『經國大典』의 편찬·반포와 초주 갑인자본 관련 초기 판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76, 2018, 121쪽; 양혜원, 「『經國大典』 판본 연구」, 『奎章閣』 53, 2018, 160쪽.

42) 『성종실록』 권127, 성종 12년(1481) 3월 24일 무술; 『경국대전』 예전 제과; 『연산군일기』 권28, 연산 3년(1497년) 12월 12일 기묘 “大典所載 不可輕改 成宗之教 洋洋盈耳 臣不敢擅便”; 이상은 金龍德, 「婦女守節考」, 『亞細亞女性研究』 3, 1964, 131~132쪽.

43) 이숙인, 앞의 책, 130쪽 도표 참고.

이다. 결국 절부는 죽을 때까지 수절하는 것이고, 열부나 열녀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를 손상시켜 정조를 지켜낸 여성이다.⁴⁴⁾

절부는 남편의 사망 이후 개가하지 않은 여성, 열부는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공간에서도,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남편을 위해 죽거나 혹은 폭력을 당하여도 굴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다.⁴⁵⁾ 과부수절은 절부에 해당하고, 자결·피살·호환·간병 사례는 열부·열녀에 해당한다. <표 3>에서 보았듯이 과부수절이 58%로 가장 많다. 『승람』에서 약혼자가 사망하였지만 시집가지 않고 수절한 정녀수절(貞女守節) 사례는 충주목 본조 최씨 1명뿐이며, 약혼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따라 죽은 열녀순부(烈女殉夫)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실록』에서도 조선초기 남편을 일찍 여의었으나 개가하지 않고 오랫동안 수절한 여성을 절부로 포상한 사례가 많다. 청주 사람 김씨는 나이 19세에 남편이 죽었는데, 부모가 그 뜻을 꺾으려 하자, 머리를 자르고 쫓지 않았으며 60여 년을 수절하였다.⁴⁶⁾ 연산 사람 허씨는 나이 19세에 남편을 잃고 3년상을 마친 뒤에 부모와 종족이 개가시키고자 하였으나, 맹세코 허락하지 않고 시어미 봉양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였는데 나이 80세였다.⁴⁷⁾

이러한 과부수절 사례는 역설적이게도 조선전기까지 개가가 일반적이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조선전기 지배세력이 과부수절을 열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2. 개가거부(改嫁拒否)

평안도 벽동군 신증 계수는 관노 고진석의 처인데, 남편이 죽자 시아

44) 이상은 장민걸 저, 이인경 역, 『중국의 혼인과 가정』, 문사철, 2012, 200~202쪽.

장민걸은 貞操를 寡婦守節, 烈婦殉夫, 貞女守節, 烈女殉夫로 구분하였다.

45) 강명관, 앞의 책, 34~35쪽, 40쪽.

46)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1397) 5월 4일 을묘.

47)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1399) 12월 1일 정유.

버지가 재가를 권했으나 따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끝까지 절개를 지켰다. 구례현 본조 기록에는 “남편이 죄를 짓고 멀리 귀양 가다가 도중에 죽자 계수는 다니면서 빌어먹었다. 이를 불쌍하게 여긴 시부모가 탄 데로 시집보내려 하자 목매어 죽으려 하니 시부모가 놀라서 그만두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문을 세웠다.”고 나온다.⁴⁸⁾

이처럼 『승람』의 열녀 중에는 시부모나 친정 부모 등의 개가(改嫁) 요구를 완강히 거부한 열녀가 32명(20%)이다. 20명(13%, 고려 1, 본조 13, 신증 6)은 단순히 개가를 거부하고 수절하였으나, 4명(2%, 본조 2, 신증 2)은 개가를 거부하다가 자결하였으며, 8명(5%, 본조 3, 신증 5)은 남이 장가를 들러 하거나 옥보이려 하자 목을 매었다.

대체로 여말선초 여성들은 남편 사후 나이가 젊고, 살림이 빈궁하면 부모나 시부모로부터 개가를 요구받았으며, 못 남성들이 장가들려 하였다. 개가 요구나 위협이 지나칠 경우는 목을 매어 절개를 지키기도 하였으나 특별한 경우이다. 성리학적 유교 윤리가 확산되면서, 지배층 여성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어진 딸이 되었고 시집간 후에는 현숙한 부인이 되었으며, 변고를 만나면 열부가 되었다.⁴⁹⁾ 『승람』에 실린 열녀 가운데 개가를 거부하고 수절한 사례가 본조 시기에 많아지다가 신증 시기에 줄어들어 가는 것은 일부종사(一夫從事), 개가금지(改嫁禁止), 종신수절(終身守節)이 이제는 여성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이 되어갔음을 보여준다.

3. 부몰여묘(夫沒廬墓)

충청도 예산현 본조 매읍덕은 호장 장중연의 딸인데, 나이 23세에 남

48) 『중종실록』에는 “구례 사람 고진석의 아내 계수는 남편이 죽어 수절하는데, 시부모가 그의 빈궁한 것을 애굽히 여겨 마음을 고쳐 시집가게 하려 하였으나, 죽기를 한하고 따르지 않았다. 명하여 旌門을 지어 표창하고 부역을 면제케 하며, 물품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중종실록』 권2, 2년(1507) 3월 7일 경술.

49) “在家爲賢女, 適人爲賢婦, 遭變故而爲烈婦.” 『고려사』(1451) 권121 열전 권34 열녀서문.

편이 죽자 무덤 곁에 여막을 세우고 3년간을 친히 제사하며 소금·장 등을 먹지 않았다. 뒤에 부모가 그 뜻을 꺾으려 하자, 스스로 죽기를 맹세하였으며, 마침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경기도 광주목 이씨는 연산군 때에 남편이 멀리 귀양갔다가 피살되자, 이씨가 염습하고 장사 지내는데 예를 다하였으며, 여막을 산소 곁에 짓고 손수 제사 음식을 갖추었다. 복을 벗은 뒤에도 술과 고기를 먹지 아니하니 금상 2년(중종 2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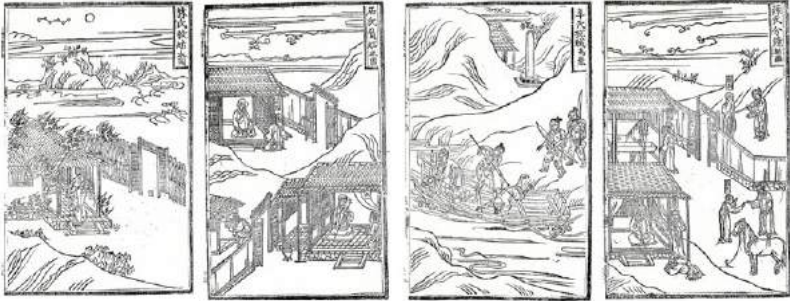
『승람』에는 남편이 죽자 여묘를 산 열녀가 고려 2명, 본조 17명, 신증 4명, 모두 23명(15%)이다.⁵⁰⁾ 조선 건국 이후 늘어나다가 신증 단계에 오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여말 선조 열녀 중에는 남편이 죽으면 여성의 몸으로 여묘를 살기도 하였다. 유교윤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다. 중앙 정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열행으로 인정하여 열녀로 포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의 실절(失節)이 우려된다며 여묘살이를 금하자는 논의도 있었다.⁵¹⁾

4. 남효여열(男孝女烈)

『삼강행실 효자도』(1432)에는 27건의 우리나라 사례가 실려 있는데 여성은 8건이다. 이 중 신라의 설씨분경(薛氏分鏡), 고려의 신씨액적(辛氏扼賊), 본국의 석씨부고(石氏負姑), 임씨구고(林氏救姑)의 주인공은

50) **고려** 대흥현곽씨, 영암군김씨, **본조** 고양군신씨, 마전군홍씨, 문의현박씨, 영동현정씨, 예산현매읍덕, 안양현정씨, 삼가현정씨, 익산군오씨, 금구현박씨, 함열현이씨, 나주목나씨형제, 광산현민씨, 구례현임씨, 평산도호부조씨, 곡산군강씨, 배천군원씨, **신증** 한성부유씨, 민씨, 광주목이씨, 진주목정씨.

51) 경주임내자인현이애의 처 장씨가 남편의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살자, 관에서 금하였으나 장씨가 듣지 않았다. 장씨의 여묘살이에 대하여 예조 판서는 정문과 복호는 하지 말고, 여묘도 금하지 말자고 하였으며, 이조 판서와 찬성은 근래 부녀가 여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를 금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의정은 장씨의 행실이 실절(失節)한 자와는 거리가 머니 그 뜻에 따르기를 허락하여 상제(喪制)를 마친 뒤에 복호하자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 뒤에 장씨에게 쌀 10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권52, 13년(1431) 5월 17일 경진; 그러나 『승람』 경주부에는 열녀 장씨가 없다.



〈그림 1〉 『삼강행실 효자도』(1432)

『승람』의 열녀 항목에 실렸다. 경주부 설씨는 늙은 아버를 위해 대신 수 자리 나간 가실을 기다려 혼례를 치렀다. 경상도 영산현 신씨는 왜적이 아버를 쏘아 죽이자 왜적의 목을 누르고 발로 차 넘어뜨리다가 살해되었다. 경상도 의령현 석씨는 남편이 죽자 개가하지 않고 시어미를 봉양 하되 뒷간 갈 때마다 몸소 업고 갔다. 전라도 태인현 임씨는 남편이 출 타 중 집에 불이 나자 시어미를 업고 나와 죽음은 면하였다. 『승람』 편 찬자들은 이들의 행적을 효행으로 보지 않고 열행으로 평가하였다.⁵²⁾

불과 50여 년 전에는 효녀, 효부로 인식하던 인물을 열녀로 바꾼 것이다. 조선전기 유교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에게는 점차 효행보다는 정조 나 순결의 열행을 강요해 가던 이미지 변환 과정의 산물이다. 16세기 중후반이 되면 사위에서 사위로 이어지던 마을이 부계 마을로 전환되기도 하였다.⁵³⁾ 이제 조선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는 열행을, 남성들에게는 효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은 열녀, 남성은 효자라는 등식이 성립하였다.

52) 이재두, 앞의 논문(2015b), 341쪽.

53) 이순구는 16세기 중후반 양동마을은 부계 마을로 전환되면서 이 지역 여성들에게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딸로서의 재산권은 축소됐을 지 모르지만, 며느리로서의 재산권 행사 영역은 더 커질 수도 있었다고 보아 여성들에게 반드시 불리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순구, 「조선전기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와 재산권-경주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3, 2015, 62~63쪽.

5. 계층불문(階層不問)

15세기에는 양천제 사회로 지배층인 양반 사족이 하나의 신분층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사족은 16세기 전반 하나의 신분적 모습을 보였지만, 17세기 전반이 되어서야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하나의 신분으로 공인을 받았다.⁵⁴⁾

그러나 기왕에 양반, 중인, 상민, 천민(노비)의 신분 구성을 사용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를 활용하면 조선전기와 조선후기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계층별 열녀 포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표 5>는 『승람』에 실린 열녀의 신분별 분포를 본조와 신증으로 나누고, 『여지도서』와 비교하여 살핀 결과이다. 이정주의 논문에 나오는 <표 2>와 <표 3>을 합친 것으로,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승람』 본조 6명과 『여지도서』 23명은 통계에서 제외하였다.⁵⁵⁾

<표 5> 『승람』과 『여지도서』에 실린 열녀의 신분 분포 (단위 : 명)

지리지 인원 신분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본조		신증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양반	45	64.3%	29	55.8%	887	77.2%
중인	5	7.1%	2	3.8%	20	1.7%
상민	18	25.7%	17	32.7%	188	16.3%
노비	2	2.9%	4	7.7%	55	4.8%
합계	70	100.0%	52	100.0%	1,148	100.0%

『승람』에는 본조에 비하여 신증에서 ‘양반’이 64.3%에서 55.8%로 줄

54)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501~506쪽.

55) 이정주, 「조선시대 貞節 倫理의 실천자와 身分」, 『역사민속학』 24, 2007a, 112쪽.

어든 반면, 노비는 2.9%에서 7.7%로, ‘상민’은 25.7%에서 32.7%로 증가하였다. <표 5>에서 드러난 것처럼 조선전기에는 지배층만이 아니라, 피지배층인 ‘상민’과 노비들도 많이 포상하였다. 그 결과 성종 때 초간하고, 중종 때 신증한 『승람』 열녀 항목에는 하층민이 비교적 많이 실릴 수 있었다.

영조 때 편찬한 『여지도서』에는 이전에 간행한 『승람』의 인물을 거의 그대로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 신분이 77.2%로 압도적이다.⁵⁶⁾ 조선 후기에는 포상 절차가 까다로워 상민이나 노비 등 피지배층은 포상받기가 쉽지 않았다.⁵⁷⁾ 여성 중에는 남편 사후 따라 죽는 쪽을 택함으로써 가문을 위해 열녀로 인정받으려고 하였다. 재혼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는 열녀로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⁵⁸⁾

조선후기 열행은 당사자 여성의 뜻이라기보다 다양한 시선에 의해 주문되고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결의 형태를 띠어 그 죽음이 주체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권유되거나 강요되는 방식의 사회적인 타살에 가깝다. 자손들은 선대 여성들의 죽음을 의미화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다. 국가 공인의 열녀‘증’을 받는다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다.⁵⁹⁾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많은 여성들은 일본군으로부터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끊었다.⁶⁰⁾ 임진왜란 때 포상한 열녀의 수는 효자나 충신

56) 『실록』을 분석한 박주의 연구를 보면 사족의 처가 17세기에는 54%, 18세기에는 57%, 19세기 전반기에는 87%, 19세기 후반기에는 81%이다. 박주, 『조선시대의 정표 정책』, 1990, 233쪽 및 박주, 『조선시대의 효와 여성』, 2000, 233쪽, 255쪽, 301쪽; 이정주는 『승람』과 『여지도서』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에 들어와 충효열의 상징인 효자와 열녀는 권력의 상징으로 바뀌었고, 자연히 유교 윤리 또한 양반층에게 독점되어갔다”고 단언하였다. 이정주, 앞의 논문(2007a), 121쪽; 박주의 연구를 참고 하면, 조선후기 읍지는 지방관, 사족, 향리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실록』 기록에 비하여 하층민들보다는 사족 계층이 많이 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에 비하여 조선후기가 될수록 사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57) 이희환, 「조선 말기의 旌閭와 家門 승상의 풍조」, 『朝鮮時代史學報』 17, 2001, 142쪽.

58) 이순구, 앞의 논문(2013), 178쪽 참고.

59) 이숙인, 열녀 조씨의 진실(2019. 8. 23), hani.co.kr/arti/culture/book/906848.html

을 합한 수보다 약 3배나 많다.⁶¹⁾ 이에 따라 조선후기 읍지에는 효자 대비 열녀의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⁶²⁾

V. 맺음말

『신증동국여지승람』(이하 『승람』)은 1485년(성종 16)에 초간한 『동국여지승람』을 46년 후인 1531년(중종 26)에 신증한 전국읍지이다. 이 책에 실린 각 고을의 열녀 항목을 분석해보면 조선전기 지배층이 인식하고 있던 유교 윤리를 실천한 모범적인 여성의 기준을 알 수 있다. 『승람』에는 모두 157명의 여성이 고을별 열녀 항목에 실려 있는데, 81%는 조선시대 인물이며, 경상도와 전라도가 50%를 넘는다. 『승람』 편찬 당시 이 두 지역은 인구도 많았지만, 유교화가 많이 진척되었으며, 열녀 사례 발굴에도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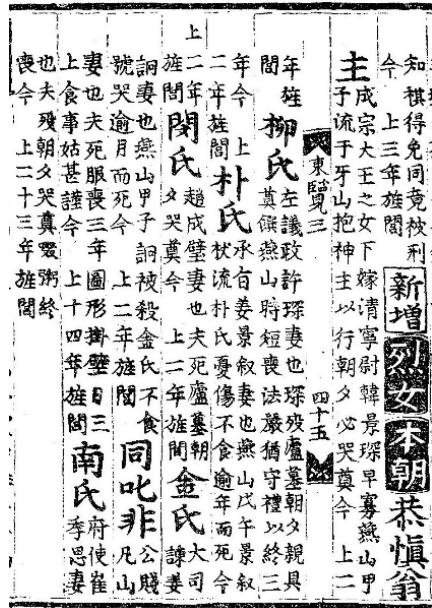
『승람』의 열녀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었으나 개가하지 않고 오랫동안 수절한 경우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자살은 조선 건국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초간 때인 본조 시기보다는 신증 시기에 더 증가하였다. 피살은 모두 고려 말 왜구의 침입에 맞서 절개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경우이다. 약혼자가 사망하였지만 시집가지 않은 사례는 단 1명뿐이며, 약혼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따라 죽은 열녀는 없다. 여묘를 살기도 하였는데, 여말 선조 유교윤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다. 『삼강행실 효자도』(1432)의 국내 효녀 8명 중 4명이 『승람』에서는 열녀 항목에 실린 것은 특기할 만하다.

60) 정일영은 “열녀들은 남성이 정절을 위협할 때 목숨을 버려가며 저항하였다. 이는 사례의 진실성과 관계없이, 편찬자 남성들의 기대 및 의도가 투영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일영, 「임진왜란 이후 教化의 양상-광해군대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4, 2010, 68쪽.

61) 박주, 앞의 책(1997), 144쪽.

62) 이정주, 「전국지리지를 통해 본 조선시대 忠·孝·烈 윤리의 확산 양상」, 『한국사상사학』 28, 2007b, 318~319쪽.

『승람』에 실린 열녀는 조선전기 지배층이 이상적으로 삼았던 모범적인 여성의 이미지이다. 조선후기의 열녀상과는 다르며, 조선전기 일반적인 여성들의 존재양상과도 다른 아주 특별한 여성들의 모습이다. 조선전기의 열녀는 단순히 개가를 거부하고 종신수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묘를 살거나 하층민이 포상 받는 경우도 많았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당시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절개를 지키다가 피살된 경우는 적었다. 『승람』을 편찬하면서 이전에는 효녀로 인식하던 인물을 열녀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조선전기 유교화가 진척되면서 여성에게는 열행을 효행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승람』의 열녀 항목은 조선전기 유교화 과정의 산물이며, 임진왜란 당시나 그 이후에 포상한 조선후기의 열녀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림 2> 『신증동국여지승람』 한성부

※ 이 논문은 2019년 8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9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경국대전』, 『고려사』, 『삼강행실 효자도』(1432), 『삼강행실 열녀도』(1432),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헌산지』.
-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VII, 민족문화추진회, 1967.
-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 노사신 외, 『신증동국여지승람』, 명문당, 1981.
- 朴珠, 『朝鮮時代の 旌表政策』, 一潮閣, 1990.
- 박주, 『조선시대의 효와 여성』, 국학자료원, 2000.
-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2014.
- 마르티나 도이힐러 저, 이훈상 역,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
- 장민걸 저, 이인경 역, 『중국의 혼인과 가정』, 문사철, 2012.
- P. B. 에브레이, 배숙희 역, 『중국 여성의 결혼과 생활』, 삼지원, 2000.
- 강명관, 「『삼강행실도』-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2002.
- 강명관, 「節婦, 烈婦, 烈女」, 『東洋漢文學研究』 25, 2007.
- 강명관, 「조선전기 부처제(婦處制)와 ‘사나운 처’(悍婦)」, 『여성과 역사』 25, 2016.
- 강순애, 「『經國大典』의 편찬·반포와 초주갑인자본 관련 초기 판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76, 2018.
- 권순형, 「고려말 열녀 사례 연구 - 양수생 처 열부 이씨」, 『여성과 역사』 22, 2015.
- 金龍德, 「婦女守節考」, 『亞細亞女性研究』 3, 1964.
- 金澤中, 「『元史』 「列女傳」의 수록기준과 서술형태」, 『中央史論』 10·11, 1998.
- 서보경, 「동아시아 열녀담론 재고」, 『우리文學研究』 51, 2016.
- 양혜원, 「『經國大典』 판본 연구」, 『奎章閣』 53, 2018.
- 이경하, 「『삼강행실도』의 폭력성 재고-열녀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 35, 2009.
- 이순구, 「조선전기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와 재산권 - 경주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 『여성과 역사』 23, 2015.
- 이재두, 『『東國輿地勝覽』의 孝行 記錄과 孝 認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이재두, 『신증동국여지승람』 효자편의 효행 사례와 정표 유형, 『조선사연구』 24, 2015a.
- 이재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반영된 효 인식, 『영남학』 28, 2015b.
- 이재두, 「『헌산지』에 실린 『여지도서』의 목차와 편찬 규정」, 『영남학』 60, 2017.
- 이정주, 「조선시대 貞節 倫理의 실천자와 身分」, 『역사민속학』 24, 2007a.
- 이정주, 「전국지리지를 통해 본 조선시대 忠·孝·烈 윤리의 확산 양상」, 『한국사상사학』 28, 2007b.
- 이희형, 「섹슈얼리티로 본 한국 전통여성의 주체적 삶의 양상」, 『동아시아고대학』 38, 2015.
- 이희환, 「조선 말기의 旌閨와 家門 승상의 풍조」, 『朝鮮時代史學報』 17, 2001.
- 정일영, 「임진왜란 이후 敎化의 양상-광해군대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4, 2010.
- 후이민[胡益民], 「명청시기 휘주 여인들의 순절과 정절」, 『호남문화연구』 50, 2011.
- 이숙인, 열녀 조씨의 진실(2019. 8. 23), hani.co.kr/arti/culture/book/906848.html

Abstract

The Conception of Faithful Women to be reflected in the *S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Lee, Jae-doo

This paper looked into the behavior, locale and era of the 157 women written in the section of the faithful women(烈女) in *S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新增東國輿地勝覽』, here after *Seungram*). As a result the following facts were revealed.

Jeolla Province was enthusiastic about discovering the cases of the faithful women and Chungcheong Province was neglectful about finding the faithful women as well as devoted sons. According to the *Diary of the King Yeonsan*(『燕山君日記』), during that period six faithful women were rewarded, and five of them are mentioned in the *Seungram*. According to the *Seungram* there is only one faithful woman rewarded during the King Yeonsan period.

The most frequent cases covering 58 percent, were women who kept a chaste life. 19 percent of the cases were the women who chose suicide, which were found only during the time when the original and revised book were written. 10 percent of the cases were the women who were murdered and they all were sacrificed while trying to keep chaste(守節) against the Japanese invaders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The cases in which wives hung themselves or starved themselves to death after their husband died increased. There was one case when the woman did not get married after her fiancé died, but there were no cases of faithful women dying following the fiancé's death.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customs of wives' living in a hut near the husband's grave during the time when the original edition of the book was written, many such women were rewarded, but when the revised book was written, those cases were remarkably decreased. This change reflects that it was now required for women to have only one husband, keep chaste after the husband's death, and not to remarry(改嫁).

The faithful women in *Seungram* is the product of the Confucianization(儒教化) and were clearly different from faithful women who were rewarded during an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 the first half of the Joseon dynasty, faithful women were rewarded for living in a hut near their husband's grave and refusing to remarry, but in the last half of the Joseon dynasty, women hardly lived near their husbands' graves and it was unthinkable for a woman from a good class to remarry.

keywords

S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新增東國輿地勝覽』), Faithful woman(烈女), Confucianization(儒教化), Keeping chaste(守節), Remarrying(改嫁).